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별고사 실시를 위한 지침 마련 등〉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32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6.

3. 회부연월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9(대학별고사의 실시)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u>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u>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34조제2항)¹⁾,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5조 제1항)²⁾.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전형자료 중 하나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대학별고사 지침 마련 및 지침 준수 여부 감독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학교 입학전형은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수시모집 기간에는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 운영되며, 정시모집 기간에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이 대체로 운영됨³⁾.

2023학년도 이후 모집시기·전형유형별 모집 비율을 살펴보면,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중 논술위주전형이 운영되는 수시모집 비율이 전체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전형 유형	주요 전형요소
학생부 위주	· (학생부종합) 교과·비교과
논술 위주	·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실기/실적 위주	· 논술(대학별고사) 등
수능 위주	· 실기 등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자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교협)

모집비율의 약 80%(정시모집비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 학년도 지역별 대입전형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논술위주전형 운영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모집시기·전형유형별 모집 비율('23~'26학년도) >

(단위: 명, %)

구분	전형유형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4,464	44.2%	154,121	44.8%	154,475	45.3%	155,495	45.0%
	학생부위주(종합)	81,390	23.3%	79,358	23.0%	78,924	23.1%	81,373	23.6%
	논술위주	11,016	3.2%	11,214	3.3%	11,266	3.3%	12,559	3.6%
	실기/실적위주	21,014	6.0%	22,539	6.5%	22,531	6.6%	21,865	6.3%
	기타	4,558	1.3%	4,800	1.4%	4,285	1.3%	4,556	1.3%
수시 소계		272,442	78.0%	272,032	79.0%	271,481	79.6%	275,848	79.9%
정시	수능위주	69,911	20.0%	66,300	19.3%	63,827	18.7%	63,902	18.5%
	실기/실적위주	6,150	1.8%	5,515	1.6%	5,224	1.5%	4,726	1.4%
	학생부위주(교과)	252	0.1%	228	0.1%	174	0.1%	317	0.1%
	학생부위주(종합)	313	0.1%	162	0.0%	183	0.1%	219	0.1%
	기타	56	0.0%	59	0.0%	45	0.0%	167	0.0%
정시 소계		76,682	22.0%	72,264	21.0%	69,453	20.4%	69,331	20.1%
합계		349,124	100%	344,296	100%	340,934	100%	345,179	100.0%

(자료: 교육부)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보도자료(2024학년도~2026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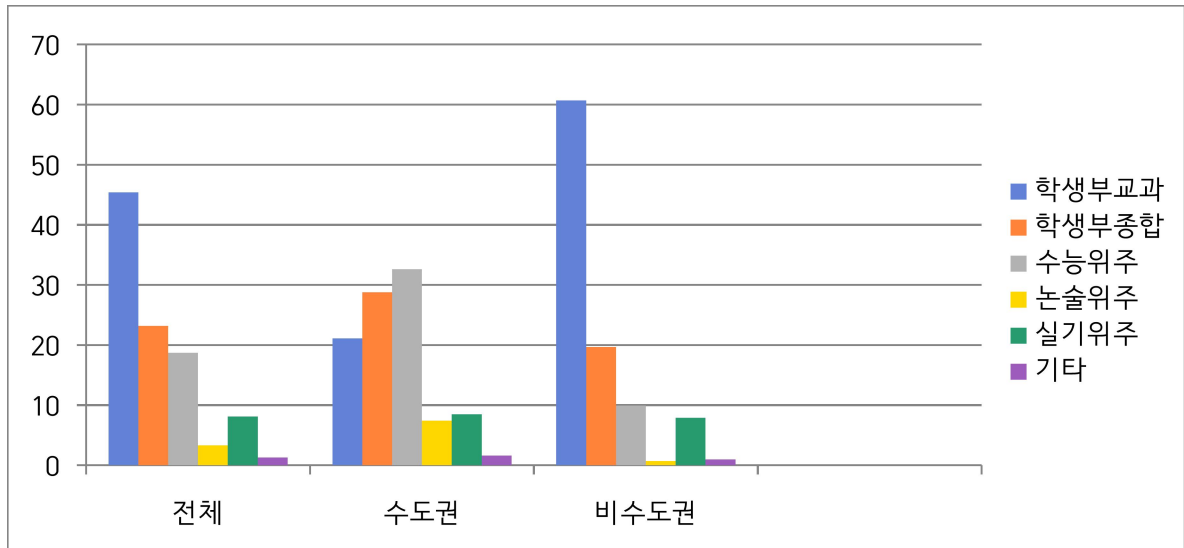
< 지역별 대입전형 운영현황('24~'26학년도) >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전체	학생부위주 (교과)	142,494	11,855	154,349	141,501	13,148	154,649	141,893	13,919	155,812
	학생부위주 (종합)	68,589	10,871	79,520	68,229	10,878	79,107	70,661	10,931	81,592
	논술위주	11,178	36	11,214	11,213	53	11,266	12,499	60	12,559
	실기/실적 위주	27,365	689	28,054	27,122	633	27,755	26,158	433	26,591
	수능위주	62,875	3,425	66,300	60,239	3,588	63,827	60,248	3,654	63,902
	기타	245	4,614	4,859	215	4,115	4,330	489	4,234	4,723
수도권	학생부위주 (교과)	24,946	2,235	27,181	25,130	2,698	27,828	25,209	2,750	27,959
	학생부위주 (종합)	32,682	5,653	38,395	32,476	5,520	37,996	32,922	5,833	38,755
	논술위주	9,452	21	9,473	9,740	38	9,778	10,893	45	10,938
	실기/실적 위주	10,570	500	11,070	10,790	438	11,228	10,324	173	10,497
	수능위주	40,516	3,302	43,818	39,685	3,432	43,117	40,023	3,486	43,509
	기타	1	2,369	2,370	1	2,178	2,179	0	2,120	2,120
비수도권	학생부위주 (교과)	117,548	9,620	127,168	116,371	10,450	126,821	116,684	11,169	127,853
	학생부위주 (종합)	35,907	5,218	41,125	35,753	5,358	41,111	37,739	5,098	42,837
	논술위주	1,726	15	1,741	1,473	15	1,488	1,606	15	1,621
	실기/실적 위주	16,795	189	16,984	16,332	195	16,527	15,834	260	16,094
	수능위주	22,359	123	22,482	20,554	156	20,710	20,225	168	20,393
	기타	244	2,245	2,489	214	1,937	2,151	489	2,114	2,603

(자료: 교육부)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보도자료(2024학년도~2026학년도)

< 지역별 대입전형 운영현황(2025학년도 기준) >

구분		학생부위주			수능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기타	합계
		교과	종합	소계					
전체 (a+b)	인원	154,649	79,107	233,756	63,827	11,266	27,755	4,330	340,934
	비율	45.4	23.2	68.6	18.7	3.3	8.1	1.3	100
수도권(a)	인원	27,828	37,996	65,824	43,117	9,778	11,228	2,179	132,126
	비율	21.1	28.8	49.8	32.6	7.4	8.5	1.6	100
지방(b)	인원	126,821	41,111	167,932	20,710	1,488	16,527	2,151	208,808
	비율	60.7	19.7	80.4	9.9	0.7	7.9	1.0	100



(자료: 교육부)

그런데 최근 논술위주 전형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의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음.

대학별고사인 논술위주 전형의 증가추세 및 공정한 실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별고사의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학별고사의 운영 주체는 대학의 장이며, 대학별로 전형 운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침 수립 의무는 대학의 장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그 외 개정안은 입학전형 자료 중 하나인 ‘대학별고사’ 근거를 안 제34조의9에 신설하였는데, 현행법상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에서 입학전형 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 신설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적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⁴⁾.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전형 운영 여건이 학교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획일적 지침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수립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임

4)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자료] 대입전형 연혁

- (1994~2007) 정부는 **학력고사 폐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고, 대학은 수능 성적, 논술, 학생부 내신 등을 활용하여 학생 선발

1994~1996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 - 대학별로 대입전형요소 반영비율, 방법 자율 결정
1997~2001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 본고사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도입, 대학별 다양한 전형 실시
2002~2007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 선택형 수능 도입(2004~), 직업탐구 영역 신설

- (2007~2012) **참여정부 말부터**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부 및 각종 외부경험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유도

※ 대입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 권한을 대학교협에 이관**

- (201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개편하였으며,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전형이 아닌 학생부·수능위주 전형** 운영 유도

2014~현재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대학별 고사 -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 포함) - 정시는 수능전형, 실기전형 • 수능 시험 변화 - 국·영·수 A/B형(2014), 영어 A/B형 폐지(2015), 국·수 A/B형 폐지 및 한국사(절대평가) 필수(2017), 영어 절대평가(2018)
---------	---

□ 최근의 대입제도 개편

- **(2022학년도 대입 개편)**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18.8)

전형구조개편	-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권고(30% ↑) -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활용
수능 체제 개편	- 국어·수학 공통+선택 구조로 개편, 사회·과학 교차선택 가능 -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 EBS 연계율 축소(70%→50%)
학종전형	-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 개선

공정성 제고	(부모정보 삭제, 수상경력 개수 제한, 소논문 미기재 등)
대학 선발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축소(5천자→31백자), 교사추천서 폐지 - 대학의 평가기준 공개,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수시 적성고사 폐지 및 논술 단계적 폐지
정보격차 해소	- 전형명칭 표준화 등

-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19.10~11)를 기반으로 방안 마련(‘19.11)

(고교) 전형자료 공정성 강화	-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 대입반영 폐지 (영재·발명교육,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개인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24학년도에 완전 폐지) - 교원의 학생부 평가·기록 비위 엄정 조치, 관리·감독 강화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 대입 전 과정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20~) - 학생부종합전형 세부 평가기준 공개(‘20) - 외부 공공사정관 참여, 대학에 대한 감사 강화(종합감사 시 점검)
대입전형 구조개편	-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서울 16개 대학 40%까지 확대) -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유도,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 **(2028학년도 대입 개편) ‘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하며 공정한 입시를 치르도록 수능 및 고교 내신 개선(‘23.12)

(수능) 통합·융합형 수능 체계 도입	- 선택과목 유불리 해소를 위해 쏠과목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 - 문·이과 융합 핵심내용인 통합사회·통합과학 출제, 사회·과학에 선택과목 없이 동일하게 응시 - 수능 출제·관리 쏠단계에 걸쳐 제도적으로 이권 카르텔 차단
(내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평가방식 개선	- 내신 9등급제→5등급제로 개편 - 고1·2·3 동일하게 쏠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 ※ 旣 예고(‘21.2) : 고1(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 고2·3(선택과목) 전면 절대평가(성취평가) - 서·논술형 평가 확대, 절대평가 안착 지원 및 교사 평가역량 강화 지원